

# 2021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도내 농촌진흥기관 개발 농업 신기술·신품종 및 농업인 보유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경기도지사

## 1. 사업목적

- 경기도 농촌진흥기관 및 농업인 개발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지원
- 신품종 마케팅을 통한 농업인 신품종 도입 확대 등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21년 농업 신기술 활용 상품 개발 및 개선 지원
- 사업량 : 총 9개소
- 사업비 : 160,000천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21. 3. ~ 11. (9개월 이내)
- 세부사업 현황 및 지원대상

세부사업명	사업비(개소당)	사업량	지원대상
신기술 활용 신제품 개발 및 개선 지원	20,000천원	5개소	경기도 또는 농업인이 직접 개발한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개선 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신품종 농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촉진 지원	15,000천원	4개소	경기도 개발 신품종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판매촉진 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신기술 활용 신제품 개발 및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제품 연구개발 ·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관련 시험 · 검사 비용</li> <li>- 연구용 원 · 부재료 구입(최대 1,000천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li> <li>-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최대 5,000천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li> <li>- 신제품 출시를 위한 홍보물 제작(최대 5,000천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li> <li>- 클라우드 펀딩 또는 라이브 커머스 등을 이용한 신제품 시험 · 런칭 활동</li> </ul>
신품종 농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촉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로개척 및 촉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관련 시험 · 검사 비용</li> <li>- 품종명 활용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최대 5,000천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li> <li>- 신품종 출시를 위한 홍보물 제작(최대 5,000천원 이내, 초과시 자부담)</li> <li>- 박람회 참가 등 판로 개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매촉진 관련 비용</li> </ul>

### 3. 신청자격

세부사업명	신청자격
신기술 활용 신제품 개발 및 개선 지원	- 신청일 현재 유효한 경기도 개발 농업 신기술 기술이전 협약서 <sup>1)</sup> 또는 자체 개발 농업 신기술 <sup>2)</sup> 을 보유한 도내 농업경영체
신품종 농산물 브랜드화 및 판매촉진 지원	- 신청일 현재 경기도 개발 신품종 농산물 <sup>3)</sup> 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업경영체

###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1. 1. 7.(수) ~ 1. 27.(수)

나.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기술사업팀(본관 3층)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문의 : ☎031-229-6116~7)

1)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도내 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농업 신기술 활용에 관한 협약 또는 계약서  
 2) 지원사업 신청 농업경영체의 법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신청일 현재 국내 특허청에 출원이 완료된 특허출원증을 보유한 경우 또는 실용화가 가능한 수준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심사위원이 기술성을 인정한 경우  
 3)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쌀, 버섯, 콩, 장미, 국화, 선인장, 다육식물 등의 신품종 농산물

다. 제출서류 ※ 서식1 ~ 서식5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nongup.gg.go.kr)

-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신청 경영체(기업) 현황 소개서(서식2) 1부.
- 최근 3년간 경기도 및 시·군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서식3) 1부.
- 사업계획서(서식4)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5) 1부.
- 농업경영체증명서, 영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술이전 협약서 또는 자가 보유 특허기술 등록증 사본 1부.

## 5.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가. 선정절차

서면심사	⇒	현장실사	⇒	자체 위원회 심의	⇒	도 위원회 심의
신청자격 충족여부의 서면 검토 및 보완요구		사업계획 실행능력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점검		농업기술원 자체 심의위원회 심사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1. 7.(목) ~ 27.(수)		1. 28.(목) ~ 2. 5.(금)		2. 1.(월) ~ 5.(금)		2~3월 중(예정)

※ 2021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심의 일정 확정시 개별 안내 예정

### 나. 선정기준 : 5개 항목 100점(+기술가점 5점)

구분	배점	평가요소	평가방법
자격검토	(필수)	- 사업 신청자격 충족 여부 - 지원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계획 제출 여부 - 유사중복 사업 지원 여부	서면심사
현장실사	(필수)	-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사업환경 적정성 확인 - 적법한 영업허가 보유 여부 등	현장점검
기술가점	5점	- 경기도농업기술원 개발 농업 신기술 이전 협약 보유	서류심사
농업기술원 자체 심의위원회	30점	- 적용기술(신기술·신품종)의 적합성 - (신기술) 기술성, 제품의 적시성 및 독창성 - (신품종) 재배역량 및 발전 가능성	사업계획서 평가 및 인터뷰 심사
	30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추진 역량 및 신뢰성	
	40점	-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산출내역 검토)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기대효과 검토)	

#### 다. 심사방법

- (1단계 : 서면심사) 제출한 지원 신청서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 ※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 후 심의대상에서 제외
- (2단계 : 현장점검) 사업추진 가능여부 검증을 위한 시설 등
- (3단계 : 인터뷰평가) 자체 심의위원회 인터뷰(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 비대면 영상회의 예정(예정일정 : 2021. 2. 1.(월) ~ 2. 5.(금) 중 1일)
  -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 후 평균 점수에 따라 사업량 내 선순위 선정
  - ※ 단독 응모 또는 사업량과 동일 응모시 평균 70점 이상 획득시 선정
- (4단계 : 서면심사)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회 최종 평가

라. 심사결과 발표 : 최종 선정시 개별통지

※ 예정일정 : 2021. 2. 22.(월) ~ 3. 5.(금) 중 예정

###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을 분할 지급 가능
- 나.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농협은행) 발급 및 사용 필수
- 다. 사업추진 점검 : 사업추진 현황 현장점검 및 중간정산 실시 예정
- 라. 사업완료 기한 : 2021. 11. 12.(금) 까지
- 마. 정산보고 기한 : 사업완료일까지

### 7. 기타사항

- 가.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선정심의를 위해 필요한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기술사업팀 ☎031-229-6116~7